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1692 |
|----------|------|

2017년 4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자 : 조규영 의원(찬성자 9명)
- 나. 제 안 일 : 2017년 3월 16일
- 다. 회 부 일 : 2017년 3월 20일
- 라. 상 정 일 : 제2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4월 2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조규영 의원)

가. 제안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바,
- 서울시 감사결과를 공개토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감사직무의 독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공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을 규칙 등으로 미리 정하여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감사결과를 공개의 기준,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신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본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을 살펴보면, 2016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결과 미공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에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 권리보호, 시정 투명성 강화, 감사위원회의 역할 정립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보여짐.

< 2016년 10월 기준, 최근 3년간 감사결과 공개 총괄현황 >

| 구분 | 감사건수 | 공개건수 | 미공개건수 | 공개율 |
|-------|------|------|-------|-------|
| 계 | 99건 | 62건 | 37건 | 62.6% |
| 2014년 | 22건 | 21건 | 1건 | 95.4% |
| 2015년 | 43건 | 39건 | 4건 | 90.7% |
| 2016년 | 34건 | 2건 | 32건 | 5.9% |

2016년 감사위원회 행감요구 제출자료 383p

2016년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6.11.23. 수요일) 회의록 발췌

○ 감사위원장 김기영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규정을 맞추고 또 내부기준을 맞춰서 공개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측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공개한 후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감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서울시정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우리 서울시…….

○ 조규영 위원 이것은요 그러면 이 규정을 어긴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논쟁을 지금 저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알권리를 감사위원회가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왜, 비판이 두려워서. 그거 지금 말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답변은요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십니다. (중략)
우리 서울시 제대로 감사가 되어야 하고요 또 그 감사결과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보고가 되어야 하고요. 지금 그 자리, 그리고 심지어는 시장님조차도 시민들이

뽑은 분입니다. 요즘 토요일 나가면 다들 초등학교 아이들도 얘기합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시는, 박원순 시장조차도 시민들이 위임을 해 준 겁니다. 당연히 시민들이 잘못된 것은 아셔야 되고, 잘못됐다면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정이 되고 교정이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하라고 감사위원회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의 답변은 아주 위원장님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태도와 자세에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한 듯합니다.

- 「헌법」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규정하고, 이러한 권리는 정보에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정보에 접근인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¹⁾ 바 있음.
- 알권리의 보장은 시민을 시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정부를 감시·감독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기본권으로²⁾ 인식되고 있으며, 시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결과 공개를 조례에 명시하는 본 개정안은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과 법령의³⁾ 및 정보공개 관련 조례의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여짐.

1) 헌법재판소 판례 (1989. 9.4. 88헌마22)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2) 배정근, 2008, 정보공개법을 통한 알권리 실현의 한계, 한국언론학보 제53권 1호, 2009.2, 368-390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9조(감사결과의 공개) 법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④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 중 경고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공개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공개의 기준, 범위, 시기, 방법 등 감사결과 관련 내용을 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안(제21조제2항)과 같이, 제272회 업무보고에서 ‘감사결과 공개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05호, 2017. 3. 23., 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다만, 「공공감사기준」 제27조 감사결과 보고의 원칙에⁵⁾ 따라 감사결과를 적시에 공개하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5) 「공공감사기준」 제27조 (보고의 원칙)

제27조 (보고의 원칙)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기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전략(前略))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전략)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후략(後略))
4. 논리성: (전략)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후략)
5. 정확성: (전략)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후략)
6. 공정성: (전략)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후략)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감사결과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을 규칙 등으로 미리 정하여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p><u>제21조(감사결과의 공개 등) ①</u>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을 규칙 등으로 미리 정하여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p> |
| <p><u>제21조(감사위원회 규정)</u>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p> | <p><u>제22조(감사위원회 규정)</u> ----- ----- ----- -----</p> |
| <p><u>제22조(준용)</u>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p> | <p><u>제23조(준용)</u> ----- ----- ----- -----</p> |